

평창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(이명순 의원)

의안 번호	258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0년 08월 28일

발 의 자: 이명순의원

찬 성 자: 지광천, 장문혁의원

1. 제안이유

2009년 9월 처음 제정·실시 되어온 기존 조례를 의정모니터 모집에 공정성을 두고, 역할을 확대 명시하여 진정한 열린 의정 구현의 목적을 살리고자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의정모니터 구성을 읍·면장 추천에서 공개모집 원칙으로 변경(안 제3조)
- 나. 의정모니터의 역할을 명시 및 확대(안 제5조)
- 다. 의견 제출을 서면원칙에서 우편, 전화, 인터넷 등으로 제출방법 다양화(안 제6조)
- 라. 활동 독려를 위한 우수모니터 표창규정 신설(안 제9조)
- 마. 관계기관 및 의정모니터의 개인정보 보호규정 신설(안 제11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불임 참조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- 다. 입법예고 : 2020. 08. 04. ~ 2020. 08. 24.(20일간), 제출된 의견 없음
- 라. 집행기관의견수렴 : 2020. 07. 22. ~ 2020. 07. 30., 제출된 의견 없음

평창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평창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평창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평창군의회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 의회 의정모니터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의정모니터”란 평창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주민 중에서 평창군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의 위촉을 받아 평창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, 주민 불편사항이나 제도개선 사항 등을 제보 또는 건의하는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구성 및 위촉) ① 의정모니터의 정수는 24명 이내로 하되, 의장은 위촉대상자가 지역별·성별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의정모니터는 의회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모집으로 의장이 위촉

한다. 다만, 공개모집의 지원자가 없거나 의장이 지역별·성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는 읍·면장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할 수 있다.

③ 의정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위촉 해제) ① 의장은 의정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
1.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
2. 평창군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옮겨 의정모니터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
3. 의정모니터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켰을 때
4. 일정기간(6개월 이상)동안 의정모니터 활동을 하지 않을 때

② 제1항에 따른 위촉 해제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새로 위촉할 수 있으며, 그 임기는 위촉 해제된 사람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역할) 의정모니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
2. 군정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 또는 주민 불편사항 건의
3.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·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
4. 의회방청 및 의정활동 모니터링
5. 그 밖에 의정발전에 관한 사항

제6조(의견의 접수 및 처리) ① 의정모니터는 우편, 전화, 인터넷 등으로

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, 제출받은 의견에 대하여 의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정모니터 의견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.

② 의정모니터가 제출한 의견은 의회에서 처리하되,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관계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, 관계기관은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의장은 의정모니터가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해당 의정모니터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7조(신분증의 발급) ① 의장은 의정모니터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.

② 의장이 의정모니터의 신분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.

③ 의정모니터가 신분증을 분실·훼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조(활동지원) ① 의장은 의정모니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② 의장은 의정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, 의정모니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9조(실비보상) 회의 등에 참석한 의정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표창) 의장은 활동이 적극적이고 의견제출 실적이 우수한 의정 모니터에게는 「평창군의회 표창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제11조(개인정보 보호 등)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각종 제안 등의 의견을 접수 또는 처리를 담당하는 관계기관에서는 해당 의정 모니터의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.

② 의정 모니터는 회의, 간담회, 그 밖에 모니터 활동 중에 알게된 정보 중 공익이나 공공질서 등을 해칠 수 있거나 개인의 권리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을 함부로 누설해서는 안 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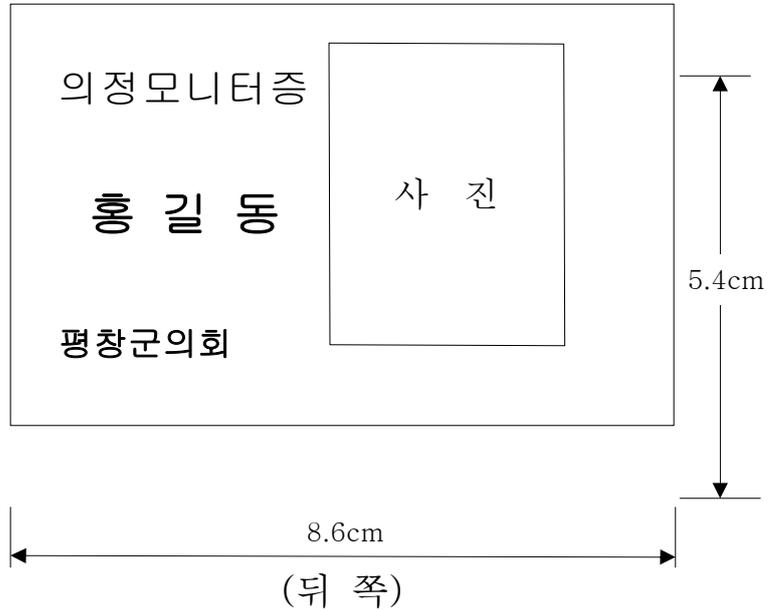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[별지 제2호서식]

의정모니터 신분증(제7조 관련)

(앞 쪽)



발급번호 :
성 명 : 생년월일 :
유효기간 :

위 사람은 평창군의회 의정활동을 모니터링 하고, 시민불편사항이나 제도개선 사항 등을 제보 또는 건의할 수 있는 평창군의회 의정 모니터링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평창군의회 의장(직인)
☎(033)330-0000

[비고]

1.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

글자의 구분	글자의 크기	글자의 종류	비 고
의정모니터증	15포인트	굴림체	보통글씨규격
성명(앞면)	18포인트	굴림체	진한글씨규격
발 급 기 관 의 장	13포인트	굴림체	진한글씨규격
기 타 글 씨	11포인트	휴먼명조	보통글씨규격

2. 신분증은 투명한 P.V.C로 접착하여 포장한다.

3. 의정모니터의 신분증에 첨부하는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으로 한다

[별지 제4호서식]

의정모니터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(제7조 관련)

1. 성 명 :
2. 생년월일 :
3. 주 소 :
4. 발급번호 :
5. 재발급 신청사유 :

※ 첨부 : 사진 1매

위와 같이 의정모니터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.

신청인 (인)

평창군의회회장 귀하

[관련법률]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제9조(실비보상) 회의 등에 참석한 의정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 중 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·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의회 이명순 의원
연락처	(033) 330 -2503